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총설

- 경제력집중이란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윤이나 소득 또는 자산 등이 특정한 경제주체에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한 규제는, 개별 시장이 아닌 산업전체 내지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一般集中 내지 所有集中으로서의 경제력집중을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되는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입법취지는 우리 경제의 유력한 경제주체인 財閥에 집중된 경제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수범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 일반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제한된다.
-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시장에서의 규제만으로 유효경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주된 동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경쟁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법이 개별시장(시장집중)이 아닌 전체시장의 지배력(일반집중, 소유집중)을 가진 재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해)

제2절 지주회사 규제

1. 지주회사의 총설

(1) 지주회사의 의의

-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특히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재벌**은 지주회사적인 구조에 의하여 집단에 속한 전체 기업들을 통일적으로 지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2) 지주회사의 유형

-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3) 지주회사의 기능

적은 자본으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점에서 규제되었으나,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라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2.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내용

(1) 규제대상

-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법 제2조 제1의 2호)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령 제2조 제1항).
-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이다(령 제2조 제2항).
-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계열회사이면서 특수관계인중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법 제2조 제1의 3호)
- 손자회사는 자회사에 의해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계열회사이면서 특수관계인중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법 제2조 제1의 4호)

(2)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신고(법 제8조)

- 신고기간은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주식취득 또는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령 제15조 제1항).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법 제8조의 2)

1) 부채비율의 제한(제2항 제1호)

-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부채비율은 200%).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될 당시에 초과된 부채액은 2년간 예외인정.
=> 외부차입에 의한 기업확장 방지.

2) 자회사 지분을 제한(제2항 제2호)

-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 지주회사의 지배가능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

3) 계열회사 등 국내회사의 주식소유 제한(제2항 제3호)

- ①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금지(다만, 비계열회사 주식소유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는 제외).
- ②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 계열회사란 특정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4)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제2항 제4호)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보험업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금융보험회사의 전산정보처리, 부동산 및 자산관리, 금융보험업의 조사와 연구 등(령 제15조의 4)]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5)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소유의 금지(제2항 제5호)

-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 금융기관의 자금고화와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확장 방지 목적

(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규제(법 제8조의 2 제3항)

1) 손자회사의 지분율 제한(제1호)

-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제2호)

3) 금융 손자회사 소유 금지(제3호)

-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음.

(5)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규제(법 제8조의 2 제4항)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 예외적으로 금융업을 제외하고 100% 증손(국내계열회사)회사 허용(제4호), 다만 증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법 제8조의 2 제5항)

(6)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법 제8조의 3)

(7)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법 제8조의 2 제5항)

(8)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의 효과

① 시정조치(법 제16조)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설립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지주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항)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를 위해 주식처분명령시 그 주식의 의결권제한(법 제18조 제1항).

② 과징금(제17조 제4항)

③ 형사처벌

- 제6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 제67조 제6호.
- 제68조 제1호, 제2호.